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제1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12. 11. 02 (금) 15:30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종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최만식 의원 등 8인

나. 의안번호 : 제 2671 호

다. 제 안 일 : 2012. 09. 28

라. 회 부 일 : 2012. 11. 02

2. 제안 이유

-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일수를 15일 이내로 운영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연간 회의총일수를 의회의 의결로 필요한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조)
-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임시회는 20일에서 15일로 운영토록 개정함(안 제3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최만식 의원님을 비롯한 8인의 의원께서 2012. 9. 28 발의하여 2012. 11. 02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7인 이상)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이며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의안입니다.

-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간의 합의와 의견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일정이 기존 회기의 기일을 넘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연간 회기의 총 일수를 당초 100일에서 의회의 의결로 추가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회기일수를 제한하여 의회의 파행을 예방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15일 이내로 정하여 연간 임시회의 총회기 일수와 관계없이 자동폐회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시의회 제5,6대 회의개최결과(별첨1,2 참조)와 경기도내 타 시군의회의 회의기간 설정 내용(별첨3,4 참조)을 분석한 결과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첨 1]

성남시의회 제5대 의회 회기운영 현황

(임시회)

회 기	기 간	일 수	비 고
136회	2006.7.12~7.13	2	
137회	2006.7.24~7.24	1	
138회	2006.8.24~9.1	9	
140회	2006.10.23~11.2	11	
142회	2007.2.23~3.8	14	
143회	2007.4.10~4.12	3	
144회	2007.5.7~5.18	12	
145회	2007.6.4~6.7	4	
147회	2007.8.27~9.6	11	
148회	2007.10.16~10.26	11	
150회	2008.2.12~2.21	10	
151회	2008.3.10~3.12	3	
152회	2008.4.14~4.16	3	
153회	2008.5.13~5.23	11	
154회	2008.6.23~6.25	3	
156회	2008.8.26~9.2	8	
157회	2008.10.13~10.24	12	
159회	2009.2.10~2.20	11	
160회	2009.3.27~4.7	12	
161회	2009.5.25~5.25	1	
162회	2009.6.2~6.5	4	
164회	2009.9.3~9.11	9	
165회	2009.10.12~10.23	13	
167회	2010.1.20~1.22	3	
168회	2010.2.18~2.26	9	
169회	2010.6.22~6.22	1	

※ 회기별 평균 일수 : 7.34일(최장일 : 14일)

(정례회)

회 기	기 간	일 수	비 고
139회(1차)	2006.9.15~9.26	16	
141회(2차)	2006.11.20~12.20	31	
146회(1차)	2007.7.2~7.12	11	
149회(2차)	2007.11.20~12.21	32	
155회(1차)	2008.7.1~7.14	14	
158회(2차)	2008.11.20~12.19	30	
163회(1차)	2009.7.1~7.16	16	
166회(2차)	2009.11.20~12.22	33	

※ 회기별 평균 일수 : 1차-14.25일, 2차-31.5일

[별첨 2]

성남시의회 제6대 의회 회기운영 현황

(임시회)

회 기	기 간	일 수	비 고
170회	2010.7.8~7.28	21	
171회	2010.8.24~8.30	7	
173회	2010.10.13~10.22	10	
175회	2010.12.31~12.31	1	
176회	2011.2.14~2.25	12	
177회	2011.3.21~3.25	5	
178회	2011.5.18~6.6	20(공전)	
180회	2011.10.11~10.21	11	
182회	2011.12.29~12.30	2	
183회	2012.2.15~2.24	10	
184회	2012.5.29~6.5	8	

(정례회)

회 기	기 간	일 수	비 고
172회(1차)	2010.9.1~9.15	15	
174회(2차)	2010.11.22~12.22	31	
179회(1차)	2011.7.1~7.19	20	
181회(2차)	2011.11.21~12.21	31	
186회(1차)	2012.7.12~8.9	28	

[별첨 3]

경기도내 시군별 회기연장 유형

구분	연장 불가	연 장 가 능			비 고
		기한 제한없음	20일 이내	10일 이내	
계	2	12	16	1	
해당시군	성남 양주	고양, 수원 군포, 안산 광주, 용인 양평, 이천 포천 안성 연천	의정부, 안양 남양주, 평택 광명, 시흥 화성, 파주 구리, 하남 의왕, 오산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부천	

경기도내 시군별 임시회 기간 현황

구분	15일 이내	20일이내	기타	미설정
31개소	17(55%)	5(16%)	6(19%)	3(10%)

[별첨 4]

경기도 시·군별 회기운영 관련 조례 현황(1)

연번	지자체명	조례명	전체 일수	일정 및 기간설정(조정) 여부	
				정례회	임시회
1	수원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100일 이내 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6일 이내 (7/1, 11/22)	20일 이내
2	성남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100일 이내	50일 이내 (7/1, 11/20) 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20일 이내 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3	고양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5일 이내 (7/5, 11/20)	각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4	부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1/21) 본회의 의결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55일 이내 각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5	안양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1/21)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 가능	각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6	안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5일 이내 (6/21, 11/28)	20일 이내
7	용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5일 이내 (7/5, 11/21)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한 회기당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8	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 가능	40일 이내 (7/5, 11/20)	15일 이내
9	남양주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3, 12/2)	각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10	평택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 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1/19)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11	광명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1/20)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 가능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12	시흥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50일 이내 (7/1, 11/20)	4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정함
13	군포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 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0일 이내 (7/1, 12/1)	20일 이내로 함
14	화성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0일 이내 (7/5, 11/25)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15	파주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7/5, 11/25) 1차 20일 이내 2차 30일 이내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
16	이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7/5, 12/1) 1,2차 각각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변경조정 가능	-

경기도 시·군별 회기운영 관련 조례 현황(2)

연번	지자체명	조례명	전체 일수	일정 및 기간설정(조정) 여부	
				정례회	임시회
17	구리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6/20, 11/20)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연55일 이내로 함
18	김포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1/20)	각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19	포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50일 이내 (6/25, 11/21)	각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20	광주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40일 이내 (6/20, 11/22)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 가능	4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정함
21	안성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50일 이내 (7/5, 11/25)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가능	4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정함
22	하남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 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2일 이내 (7/5, 12/1) 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15일 이내 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23	의왕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7/5, 11/21)	-
24	양주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120일 이내	40일 이내	매 회기별 15일 이내
25	오산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6월 넷째 주 목요일, 12/1) 1,2차 각각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 가능	-
26	여주군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0일 이내 (6/21, 12/1)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	15일 이내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
27	양평군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50일 이내 (7/1, 11/25)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 가능	각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28	동두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 한 조례	11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2/1)	매 회기별 15일 이내
29	과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7/7, 12/5) 1차 18일 이내 2차 17일 이내	회기는 1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정함
30	가평군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45일 이내 (7/1, 11/25)	55일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31	연천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7월 첫 번째 화요일, 11월 세 번째 화요일) 본회의 의결로 결정	본회의 의결로 결정